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6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정태호의원안)	3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6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22.

(3) 회 부 일 : 2025. 10.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도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정태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 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1. 채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날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채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채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소멸대상채납액 - 실태조사 결과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포함)·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실태조사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채납액, 채납처분

현 행	개 정 안
	이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 납부의무 소멸 신청 - 신청기간: 2026. 1. 1.부터 2028. 12. 31.까지 - 대리신청: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 가능 ○ 납부의무 소멸 결정 -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 ○ 소멸취소 사유 -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정태호의원안 2025. 10. 22. 발의(의안번호 13663)

□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세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한편, 동 제도와 유사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2008년 말 경제위기 등 경기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전액을 소멸해주던 제도로써,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됨.¹⁾

[종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영세개인사업자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폐업 및 재기	2018.1.1. 부터 2018.12.31.까지의 기간 중 ①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②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선의의 체납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처분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는 사람
체납액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특례 내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납부의무 면제
특례 취소	기준일 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체납액 징수특례 취소하고 강제징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 2010년 1월 1일 제도 신설 후 2014년 말에 폐지되었다가 2018년에 재시행되었음.

동 제도 시행 당시 소멸대상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40억원 수준이었다가 2018년 재시행 이후에는 약 1,130억원 수준으로 급증한 바 있음.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신청건수	승인건수	소멸대상 체납액
2010년	1,430	1,405	34
2011년	1,585	1,565	42
2012년	1,499	1,444	39
2013년	1,082	1,014	28
2014년	414	389	11
2018년	14,927	8,009	1,111
2019년	10,904	7,820	1,135

주: 소멸한도액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5백만원, 2018년 재시행 후에는 3천만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이후 2019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체납액 전액 소멸 방식 대신 가산금(2021년 12월 28일 개정 시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변경)²⁾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

동 제도는 2020년 이후 매년 다섯 차례 연장되어, 현재는 2024년까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2027년까지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경

2) 2021.12.2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국세기본법」 개정(2018.12.31. 개정, 2020.1.1. 시행) 시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바 있음)

우, 체납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최대 5년에 걸쳐 체납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영세개인사업자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폐업 및 재기	2024.12.31. 이전 폐업 후 2027.12.31.까지의 기간 중 ①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또는 ②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선의의 체납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처분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는 사람
소액 체납자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로 한정
체납액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중복적용 금지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는 제외
특례 내용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체납액에 대한 최대 5년 이내 분납 허가
신청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 취소	기준일 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체납액 징수특례 취소하고 강제징수

□ 개정안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³⁾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

3) 종전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서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악의 없는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경제적 재활을 지원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최근 영세개인사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실패한 영세사업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개업사업자 중 폐업자 수는 2020년 82만 8천명에서 2024년 92만 5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폐업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비중	합계
2020년	67,547	827,832	92.5	895,379
2021년	65,983	819,190	92.5	885,173
2022년	67,656	799,636	92.2	867,292
2023년	75,668	910,819	92.3	986,487
2024년	82,931	925,351	91.8	1,008,282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⁴⁾를 통해 납부지연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체납액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역차별 문제의 우려가 있고, 국세 등 납부의무 소멸사유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원칙⁵⁾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둘째,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동일 체납자에 대한 반복적 혜택 부여 및 제도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제99조의10제1항제6호⁶⁾와 같이 ‘제99조의5에 따른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처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5)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⑨ 제1항에서 “징수권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권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특례 적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동일한 체납자가 먼저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제도 간 중복 적용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현행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정부안)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정태호의원안)
한도	8천만원	5천만원
지원내용	분납허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재기요건	’25.12.31. 전 폐업, ’28년 내 재기	-
대상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15억원 ↓, 제조업 등 7.5억원 ↓, 서비스업 등 5억원 ↓)
체납 기준일	’25.7.25.	’24.12.31
실태조사	-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실시
신청기간	’29.12.31	’28.12.31
신청	신청	직권 또는 신청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채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구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정부안)	생계형채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정태호의원안)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좌동
요건	징수곤란 체납액(무재산자 등)	좌동
	과거 납부의무 소멸특례(99조의5)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조세범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개정안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의 내용을 구체화⁷⁾하면서 ‘결손처분’, ‘채납처분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조문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결손처분’(안 제1호)은 안 제3호와 내용이 동일하고, ‘채납처분 중지’(안 제2호)는 안 제5호와 동일하므로 중복된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법 제99조의10⁸⁾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징수곤란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63)

제99조의15(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채납처분이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실태조사일 현재 채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실태조사일 현재 총채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체납액’의 범위가 불확정하여 적용대상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

-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